## 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위험고지 안내

<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>

제2-13조의2(금융투자회사의 전문투자자 지정) ① 금융투자회사가 영 제 10조제3항제17호 (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게 향후 법 제46조, 제 46조의2 및 제47조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과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, 설명한 내용을 해당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녹취로 확인받아야한다.

- 1. 향후 적합성·적성성 원칙, 설명의무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- 2.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개인전문투자자 대상 위험고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계좌번호 :

성명: (인 또는 서명)



유선 접수시 기재사항		
■녹취시간 :	■접수자 :	
■녹취번호 :		

담당자	책임자